

think **Next**

삼성화재

SAMSUNG

삼성화재 제 2012 - 36522호

2012. 11. 8

수 신 : 각 손해사정 법인 대표이사

제 목 : 손해사정 보고서 제출시 유의사항 안내

3155-19707113-18015186

1. 평소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
2. 금번 당사의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(9월 24일 ~ 10월 19일)의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각 손사법인에 별첨과 같이 협조 요청을 드리오니 향후 당사의 위탁업무 처리 시 반드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이와 관련하여 별첨의 협조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고서 반려 및 재작성을 요구할 것이며, 각 손사법인에서는 이와 관련된 업무처리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.

별첨 : 1. 손해사정 보고서 제출시 유의사항

2. 금융감독원 지도공문(보생삼-00031, 2011.04.11 시행)

3155-19707113-18015186

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

직인
생략

보고서 제출 시 유의사항

1. 금융감독원 종합검사時 지적사항

□ 2011년 4월 11일 시행 금감원 指導公文 내용

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업자에게 보험계약자와 합의를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축소 또는 삭감하는 내용을 보험금 심사보고서에 첨부토록 하여 위탁받은 업무범위를 벗어나 보험업법 제188조 및 변호사법 제109조를 위반할 여지가 있음.

□ 당사의 경우 손사법인 간담회(2011.05.11)에서 각 손사법인에 대하여 해당 내용을 교육하고 후속 조치사항을 추가 공지한 바 있음(2011.05.12)

□ 그러나, 금번 금감원 수검 과정에서 개별 서류 확인 결과, 손사법인 조사자가 보험금 삭감동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청구하고, 그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시켜 위탁받은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, 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함

2. 향후 업무처리시 요청사항

□ 손해사정 보고서상 보험금의 '축소 및 삭감' 등의 내용 및 동의(확인)서 청구 등의 문구가 포함되지 않도록 보고서 양식 수정

- 보고서 마지막부분 '손해사정 결과안내'항목 삭제 요망

□ 사고처리 과정표에 중간보고서 제출여부 및 담당자와의 협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요망

- 유선 또는 구두협의를 상관없이 최종 보고서 제출 이전 보험사 담당자와 업무협의 진행사항(일시 및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)을 상세 기재

- 以上 -